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858
----------	-------

발의연월일 : 2026. 1. 5.

발 의 자 : 이주희 · 오세희 · 박지원

김선민 · 김 현 · 용혜인

정태호 · 박정현 · 모경중

이병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G 기술의 발달로 고가의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와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출시되면서,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지적장애인, 발달 장애인 등 장애인에게 불필요한 요금제와 단말장치를 명확한 설명 없이 판매하여 장애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장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요한 내용을 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5제4항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12의 제목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를 “(이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나이 또는”을 “나이, 장애 또는”으로, “지급하여서는”을 “지급하거나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제공·판매에 있어서 이용자를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으로 한다.

제32조의15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장애인과 이동통신서비스 제공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 또는 부가통신서비스의 조건 등 중요한 내용을 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12(<u>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u>)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의 거주 지역, <u>나이</u>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u>지급하여서는</u> 아니 된다.	제32조의12(<u>이용자에 대한 차별 금지 등</u>) ① ----- ----- ----- <u>나이, 장애 또는</u> ----- ----- <u>지급하거</u> <u>나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제공 · 판매에 있어서 이용자를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하여서는</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의15(<u>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u>) ① ~ ③ (생략)	제32조의15(<u>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u>)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u>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장애인과 이동통신서비스 제공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 또는 부가통신서비스의 조건 등 중요한 내용을 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u>

명하여야 한다.